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09일

정라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안 *우	안 *우 2003-11-14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(정상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09
김 *자	김 *자 1960-06-02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(정상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09